

PL 94-583, 1976 년 10 월 21 일, 90 Stat 2891

미국 공법
제 94 회 총회 - 2 차 세션
1976 년 1 월 19 일 개최

미국 법무부 제공 데이터. (범위 참조)
이 문서에 첨삭은 나타나지 않음.

PL 94-583 (HR 11315)
1976 년 10 월 21 일

외국 정부가 소송에서 면제되며 그 재산에 집행이 실시될 수 없는 상황 하에서의 외국에 대한 소송에서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정의하는 목적과 기타 목적의 법률.

미국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제정
이 법을 "1976 년 외국 주권 면제법"으로 칭함. //28 미국법전 1 주석//

제 2 조. (a) 미국 법전 타이틀 28 의 제 85 장을 제 1331 항 직전에 다음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개정한다 :

"제 1330 조.

// 28 미국법전 1330. // 외국에 대한 소송

"(a) 연방 지방 법원은 이 타이틀의 제 1605-1607 조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 협정에 의거하여 외국이 면제 받을 권리가 없는 개인적 구제 청구에 관련하여, 본 타이틀 제 1603 (a) 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외국에 대한 모든 배심재판이 아닌 민사소송의 논란의 정도와 관련 없이 원래의 관할권을 가진다.

"(b) 이 타이틀 제 1608 조에 의거하여 전달이 이루어진 경우, 외국에 대한 개인 관할권은 (a) 항에 의거하여 지방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모든 구제 청구에 대해 존재한다.

"(c) (b) 항의 목적 상, 이 타이틀 1605-1607 조에 열거된 거래 또는 발생으로 인해 야기되지 않는 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외국이 출두했다고 해서 개인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b)

"1331. 연방 문제; 논쟁의 양; 비용. "

전에 그 장의 장 분석에 - 다음과 같은 새 항목 :

"1330. 외국에 대한 소송"

을 삽입함으로써

제 3 조. 미국 법전 타이틀 28 의 1332 조를 (a) (2)와 (3)항을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하여 수정한다 :

"(2) 주의 시민 및 외국 시민 또는 국민;

"(3) 다른 주의 시민 및 외국의 시민 또는 국민이 추가 당사자인 경우;

"(4) 원고로서 이 타이틀의 1603 (a) 조항에 정의된 외국 및 한 주 또는 다른 주의 시민. ".

제 4 조. (a) 미국 법전 타이틀 28 을 제 95 장 다음에 다음의 새로운 장을 삽입함으로써 개정한다 :

"제 97 장 - 외국의 사법 면제

"조 항.

- "1602. 인정 및 목적의 공술.
 "1603. 정의.
 "1604. 관할권에서 외국의 면제.
 "1605. 외국의 관할권 면제에 대한 일반적 예외 사항.
 "1606. 책임 범위.
 1607. 반소문.
 "1608. 전달; 필적 답변 시간.
 "1609. 외국 재산에 대한 차압 및 집행의 면제.
 "1610. 차압 또는 집행으로부터의 면제에 대한 예외사항.
 "1611. 집행이 면제되는 특정 유형의 재산.

"제 1602 조. // 28 미국법전 1602. // 인정 및 목적의 공술.

"외국이 미국법원의 관할권에 대해 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미국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법정의와 미국 법원에서 외국의 정부와 소송인의 권리를 모두 보호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는 인정한다. 국제법에 따라, 국가는 상업 활동과 관련된 한에 있어서 외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않으며, 국가의 상업 행위와 관련하여 내려진 판결을 이행하도록 국가의 상업 재산이 압수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면제 주장은 이 장에서 명시한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 1603 조. // 28 미국법전 1602. // 정의

- "이 장의 목적을 위해,
 "(a) 이 타이틀의 제 1608 조에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은 제 (b) 항에 정의 된 바와 같이 외국이나 외국정부 기관의 정치적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
 "(b) '외국의 기관 또는 도구'라 함은 다음의 실체를 의미한다.
 "(1) 별개의 법인이며,
 "(2) 외국의 기관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이거나 그 지분이나 소유권을 외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이 소유하며,
 "(3) 이 타이틀의 제 1332 조 (c) 및 (d) 조항에 정의된 미국 시민이 아니며 제 3 국의 법규정 상 창설되지 않은 실체이다.
 "(c) '미국'은 미국 관할권 하의 모든 영역 및 영해, 대륙 또는 섬을 포함한다.
 "(d) '상업 활동'은 통상적인 상업 행위 또는 특정 상업 거래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활동의 상업적 성격은 그 목적 보다는 행동 과정 또는 특정 거래 또는 행동의 성격을 참조하여 결정해야 한다.
 "(e) '외국에서 미국이 수행한 상업 활동'은 미국과 실질적인 계약 하에 그러한 국가에서 수행된 상업 활동을 의미한다.

"제 1604 조.

// 28 미국법전 1602. // 관할권으로부터 외국의 면제

"이 법안의 제정 당시 미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국제 협정에 따라, 외국 정부는 본 장의 제 1605 조 내지 제 1607 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연방 및 주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제 1605 조.

// 28 미국법전 1605. // 외국의 관할권 면제에 대한 일반적 예외 사항.

- "(a) 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미국 연방 또는 주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1) 포기 조건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정부가 포기를 철회하려 한다고 해도 명시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면책권을 포기한 경우;

“(2) 소송이 외국이 미국에서 수행한 상업 활동, 또는 외국의 다른 곳에서의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행하여진 행위, 또는 다른 지역의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영토 밖에서의 행위로서 미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근거한 경우;

“(3) 국제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재산권이 문제이고 해당 재산 또는 이러한 재산과 교환한 재산이 외국이 미국에서 수행한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미국 내에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재산이나 그러한 재산과 교환한 재산이 외국의 기관 또는 도구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되고 그 기관 또는 도구가 미국 내에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4)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의 승계 또는 증여나 권리로 취득한 미국 내 재산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 또는

“(5) 달리 상기 (2) 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미국에서 발생하고 그 외국의 불법 행위 또는 직책상 행하는 그 외국의 공무원 또는 관리의 누락으로 인한 개인상해 또는 사망 또는 재산 피해 또는 손실에 대해 외국에 대하여 금전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재량권 남용 여부와 상관없이 재량권의 행사 또는 이행 또는 불이행에 근거한 모든 청구

“(B) 악의적인 기소, 절차의 남용, 명예 훼손, 중상 모략, 허위 진술, 기만 또는 계약 권리의 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

“(b) 해상 선취 특권이 외국의 상업활동에 근거한 경우에 외국의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해상 선취권을 집행하기 위해 해상소송이 제기 된 경우, 외국은 미국 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소송 통지서는 해상 선취 특권이 주장 된 선박 또는 화물을 소유한 사람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소환장 및 소장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제공된다. 그러나 그러한 통고는 소송제기 당사자가 획득한 절차에 따라 선박 또는 화물이 납포 된 경우는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후에도 전달될 수 없다. 그 예외는 당사자가 외국 선박이나 화물이 연루된 것을 몰랐던 것으로서, 체포 절차를 전달하면 이러한 통지가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 타이틀의 제 1608 조항에 정한 소송 개시에 대해 외국에 통보하는 것은 이 조항의 (b) (1) 항에 규정 된 통보의 전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개시되며, 외국 선박 또는 화물이 개입되었음을 몰랐던 당사자의 경우는, 그 당사자가 외국의 이해 관계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개시된다.

이 조항의 (b) (1) 항에 따라 통지가 전달 될 때는 항상 해상 선취 특권은 당시 해당 선박 또는 화물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에 대한 개인적 청구로 간주된다. 그 조건은 법원은 해상 선취 특권이 발생한 선박 또는 화물의 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외국에 대한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 가치는 이 항의 (b) (1) 항에 의거하여 통지가 전달된 시점 당시의 금액으로 결정된다.

"제 1606 조.

// 28 미국법전 1606. // 책임 범위

"외국 정부가 이 장의 제 1605 조 또는 제 1607 조에 의거하여 면제 자격이 없는 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사적인 개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진다. 대리인 또는 기구가 아닌 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망이 야기된 경우,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장소의 법이 징벌적 손해배상만 정하거나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외국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본 소송이 제기된 자들이 사망으로 인해 입은 금전 상의 손해로 측정된 실제 또는 보상적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607 조.

// 28 미국법전 1607. // 반소

"미국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외국 정부에 의해 제기되거나 외국 정부가 개입한 모든 소송에서 외국은 다음과 같은 반소에 대하여 면제를 받지 아니한다.

- “(a) 이 장의 1605 조에 의거하여 외국에 대한 별도의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외국이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맞고소, 또는
- “(b) 외국의 청구의 주제인 거래 또는 발생으로 인하여 야기된 맞고소, 또는
- “(c) 그 반소가 외국 국가가 추구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종류가 다른 구제를 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맞고소.

"제 1608 조.

// 28 미국법전 1608. // 전달; 답변 시간; 필석

"(a) 미 연방 및 주 법원의 전달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정치적 하부 조직에 전달되어야 한다.

“(1) 원고와 외국 정부 또는 정치 하부 조직 간의 특별한 전달 협약에 따라 소환장 및 소장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전달

“(2) 특별 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 문서의 송달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제 협약에 따라 소환장 및 소장 사본을 전달함으로써 전달

“(3) (1) 또는 (2)항에 의거하여 전달할 수 없는 경우, 소환장 및 소장 사본과 소송 통지를 외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하여 영수증에 서명을 요하는 모든 형태의 우송으로, 법원 서기가 해당 외국 외무부 장관 주소로 송부하여 전달

“(4) (3) 항에 의거하여 30 일 이내에 전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소환장 및 소장 및 소송 통지 사본 2 부를 각각 외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하여 수령증에 서명을 요하는 모든 형태의 우편으로 법원 서기가 워싱턴 DC 국무장관에게 송부하여 특별 영사 업무 담당자 앞으로 보내고, 국무장관은 서류 사본 1 부를 외교 채널을 통해 외국으로 송부하고 서류가 언제 송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외교 공한의 공인사본을 법원 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이 항에서 언급된 '소송 통지'는 외국 정부에 보내고 규정에 의해 국무 장관이 정한 양식으로 한 통지를 의미한다.

"(b) 미연방 및 주정부 법원에서의 전달은 외국의 기관 또는 도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1) 원고와 기관 또는 도구 간 전달을 위한 특별한 약정에 따라 소환장 및 소장 사본을 전달

“(2) 특별한 협약이 없는 경우, 소환장 및 소장의 사본을 임원, 관리 또는 일반 대리인, 또는 미국에서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명 또는 법률에 의해 위임된 대리인에게, 또는 사법 문서 전달에 관한 적용 가능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전달

“(3) (1) 또는 (2)항에 의거하여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실제 통지를 하기에 합리적으로 계산된 경우, 소환장 및 소장 사본을 각각 외국의 공식 언어로 번역하여 전달

“(A) 서한이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외국이나 정치 하부 기관이 지시한 바에 따라

“(B) 서명된 영수증을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우편으로 법원 서기가 기관이나 기구에 송달

“(C) 송달할 곳의 법과 일치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전달.

"(c) 다음과 같은 경우 전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1) (a) 항 (4) 호에 따른 전달의 경우, 외교 공한의 공인사본에 명시된 송부일 현재

“(2) 본 조항에 의거 한 다른 모든 경우에는 공인서, 서명 및 반환 우편 수령장, 또는 기타 실시한 전달 방법에 적용 가능한 기타 전달증명서에 명시된 수령일 현재

"(d) 미국 연방이나 주법원에서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외국, 그 정치 하부 조직, 또는 외국의 기관이나 기구는 본 항에 의거하여 전달된 후 60 일 내에 소장에 대한 답변 또는 대응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e) 청구인이 법원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청구나 구제권리를 성립하지 않는 한 미국 연방 또는 주법원에서 외국, 그 정치 하부 조직 또는 외국의 기관 또는 기구에 대해 쥔석판결을 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쥔석 판결의 사본은 이 조에 규정 된 방식으로 외국 또는 그 정치 하부 조직에 송부해야 한다.

"제 1609 조.

// 28 미국법전 1609. // 재산의 압류와 집행으로부터 외국 국가의 면제

"이 법의 제정 당시 미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국제 협정에 따라, 외국의 미국 내 재산은 이 협약 제 1610 조 및 제 1611 조에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 납포 및 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제 1610 조.

// 28 미국법전 1610. // 압류 또는 집행으로부터의 면제에 대한 예외사항

"(a) 이 장의 1603 (a) 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국 내에서의 상업 활동을 위해 사용된 외국의 미국 내 재산은 이 법의 발효일 이후에 미국 연방이나 주 법원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경우 집행을 지원하는 또는 집행에 의한 압류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 "(1) 포기 조건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정부가 포기를 철회하려 한다고 해도 외국 정부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집행을 지원하여 또는 집행에 의해 압류로부터의 면제를 포기한 경우.
 - "(2) 해당 재산이 그 청구가 근거하는 상업 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되었던 경우
 - "(3) 집행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소유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하여 취한 재산과 교환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는 판결과 관련되는 경우
 - "(4) 집행이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의 권리를 입증하는 판단에 관련이 있는 경우
 - "(A) 승계 또는 증여로 취득
 - "(B)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서: 단, 그러한 재산은 외교 공관이나 영사관 또는 그 공관 장의 거주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 "(5) 재산이 판결로 병합된 청구에 적용되는 자동차 또는 기타 책임 또는 손해 배상 보험에 의거하여 외국 정부 또는 그 직원을 면책하거나 무해하게 하는 계약 상 의무 또는 그로부터 얻은 수익금으로 구성되는 경우.
- "(b) (a) 항에 추가하여, 미국 내에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도구의 미국 내 재산은 이 법의 발효일 이후에 미국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집행을 지원하는 또는 집행에 의한 압류에서 면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기관 또는 도구는 포기 조건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정부가 포기를 철회하려 한다고 해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집행을 지원하는 또는 집행에 의한 압류로부터의 면제를 포기했다.
 - "(2) 이 판결은 이 장의 제 1605 조 (a) (2), (3) 또는 (5) 또는 제 1605 조 (b) 항에 의거하여 해당 청구의 근거가 되는 활동에 사용되거나 사용되었는 지에 상관없이 해당 기관이나 기구가 면제되지 않는 청구에 관한 것이다.
- "(c) 본 조항의 (a)와 (b) 항에 언급된 압류나 집행은 법원이 판결이 내려지고 이 장의 제 1608 조 (e) 항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한 후 합리적인 기간이 지났다고 결정하고 그러한 압류 및 집행을 명령할 때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 "(d) 미국에서 상업 활동을 위해 사용된 이 장의 제 1603 조 (a) 항에 정의 된 바와 같이 외국의 재산은 가져온 모든 행동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압류해서는 안 된다. 미국 또는 국가의 법원, 또는 본 조의 (c) 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 "(1) 외국 정부는 포기 조건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정부가 포기를 철회하려 한다고 해도 판결 전에 압류 면제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했다.
 - "(2) 압류의 목적은 관할권을 획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외국 정부에 대해 내려진 또는 최종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판결을 이행하는 데 있다.

"제 1611 조항.

// 28 미국법전 1611. //집행이 면제되는 특정 유형의 재산

“(a) 이 장의 제 1610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면제법 // 22 USC 288 주식// 에 제공된 특권, 면제 및 면책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지정한 단체의 재산은 미국연방 또는 주 법원에 제기 된 소송의 결과로 외국 국가에 대한 또는 그 주문에 의한 자금의 출납을 방해하는 기타 사법 절차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b) 이 장의 제 1610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재산은 다음의 경우 압류 및 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1) 포기 조건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정부가 포기를 철회하려 한다고 해도, 해당 은행 또는 당국 또는 그 정부가 그 집행을 위한 또는 집행인 압류의 면제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산은 외국 중앙 은행 또는 자국의 계좌로 보유된 통화 당국의 자산이다.

“(2) 그 재산이 군사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의도된 것일 때.

“(A) 군사적 성격인 경우.

“(B) 군사 당국이나 방위청의 통제하에 있을 때.

(b) 타이틀 28 (미국 법전)의 "제 IV 부 - 관할권 및 장소"에 대한 분석은

"95. 세관 법원." 후에 다음 신규 항목:

"97. 외국의 관할권 면제."를 삽입하여 수정한다.

제 5 조. 미국 법전 타이틀 28 의 제 1391 조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하위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한다 :

"(f)이 타이틀의 1603 (a) 조항에 정의 된 바와 같이 외국에 대한 민사 소송은 다음과 같이 제기될 수 있다.

“(1) 청구를 야기한 사건 또는 부작위의 상당 부분이 발생했거나 그 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위치한 모든 사법 구역에서;

“(2) 이 타이틀의 제 1605 (b) 조항에 따라 청구가 주장되는 경우, 외국의 선박 또는 화물이 위치하는 모든 사법 구역에서;

“(3) 본 타이틀 1603 (b) 조항에 정의된 대로 외국의 기관 또는 도구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해당 기관이나 도구가 해당 업종의 사업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법 구역에서 ;

“(4) 그 소송이 외국정부나 그 정치적 하부 조직에 대해 제기 된 경우에는 DC 의 미국연방 지방 법원에서."

제 6 조. 미국 법전 타이틀 28 의 제 1441 조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하위 조항을 그 말미에 추가하여 개정한다 :

"(d) 이 타이틀의 제 1603 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주 법원에 외국정부에 대하여 제기된 민사 소송은 이러한 소송이 계류중인 장소의 지구와 분과의 미국의 연방지방법원으로 외국정부가 이전할 수 있다. 이전 후 소송은 배심원 없이 판사가 재판한다. 이전이 본 항에 근거하는 경우, 제 1446 조 (b) 항 // 28 USC 1446. //의 시간 제한은 표시된 이유에 대해 언제든지 확대 될 수 있다."

제 7 조. // 28 미국법전 1602 주식. // 이 법의 조항이나 외국에 대한 그 조항의 적용이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 그 무효성은 무효 조항이나 그 적용 없이 효력이 있는 다른 조항이나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본 법의 조항은 분리 가능하다.

제 8 조. // 28 미국법전 1602 주식. //이 법은 제정 일로부터 9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1976 년 10 월 21 일 승인.

입법 역사:

하원보고서 번호 94-1487 (사법부 통신).

상원 보고서 No. 94-1310 S. 3553 (사법부 통신).

의회 기록, Vol. 122 (1976) : 9 월 29 일, 하원에서 심의 및 통과. 10 월 1 일, 상원에서 심의 및 통과.

대통령 문서 주간 편찬, Vol. 12, No. 43: 10 월 22 일, 대통령 성명. PL 94-583, 1976 HR 11315

문서 끝

© 2015 Thomson Reuters. 최초의 미국 정부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 없음.

CERTIFICATION OF TRANSLATION
and
DECLARATION

State of California)
) S. S.
Los Angeles County)

I, Soomi Ko, the undersigned,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am a duly certified Korean Court Interpreter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certified by the State of California and the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s, with competent knowledge of Korean and English, and that I have truthfully and correctly translated the following 7 pages of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of 1976** from English to Korean in accordance with Fed. R. Evid. 901 and that the said translation is,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 true and correct translation. I further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am neither counsel for, related to, nor employed by any of the parties, and that I have no financial or other interest in the outcome of any action related to this translation.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

Executed on February 14, 2018



Soomi Ko
California State Certified Court Interpreter
#300732
Direct: (213) 999-7848
soomi@komartin.com
www.komartin.com

Ko & Martin Certified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Specializing in Korean and Chinese Languages

28 미국법 § 1330

§ 1330. 외국에 대한 소송

- (a) 지방 법원은 이 타이틀의 1605-1607 조 [28 USCS §§ 1605-1607]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협약 하에서 외국 정부가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적 구제 청구에 관련하여, 본 타이틀 1603 (a) 조 (28 USCS § 1603 (a))에 정의된 외국에 대한 비배심 민사 소송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금액에 관계없이 원래의 관할권을 가진다.
- (b) 이 타이틀의 1608 조[28 USCS § 1608] (a) 항에 의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진 곳에서, 지방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구제 청구에 대하여 외국에 대한 개인 관할권이 존재한다.
- (c) (b) 항의 목적 상 외국 정부가 법정에 출두한 것은 본 타이틀의 1605-1607 항[28 USCS § § 1605-1607]에 열거된 거래 나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개인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28 미국법 § 1391 (f)

§ 1391. 재판장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 (f) 외국에 대한 민사 소송. 이 타이틀의 1603 (a) 조 [28 USCS § 1603 (a)]에 정의된 바와 같은 외국에 대한 민사 소송은 다음 지역에서 제기될 수 있다.
 - (1) 청구를 야기한 사건 또는 부작위의 상당 부분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상당 부분이 위치한 사법 지구;
 - (2) 이 타이틀의 1605 (b) 조 [28 USCS § 1605 (b)]에 의거하여 청구가 주장되는 경우, 외국의 선박 또는 화물이 위치하는 사법 지구;
 - (3) 소송이 이 타이틀의 1603 (b) 조 [28 USCS § 1603 (b)]에 정의된 바와 같이 외국의 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 해당 기관이나 대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가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법 지구; 또는
 - (4) 소송이 외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 DC 특별구의 미국연방 지방 법원.
- (g) 다자간, 다차원 소송. 지방 법원의 관할권이 타이틀의 1369 조 [28 USCS § 1369]에 근거하는 민사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거나 소송을 야기한 사고의 상당 부분이 발생한 지구에서 제기될 수 있다.

28 미국법 § 1441 (d)

§ 1441. 민사 소송의 철회

...

(d) 외국에 대한 소송. 본 타이틀의 1603 (a) 조 [28 USCS § 1603 (a)]에 정의된 바와 같이 외국에 대하여 주 법원에 제기된 민사 소송은 그러한 소송이 계류중인 곳을 포함하는 지구의 분과에 해당하는 미국연방 지방 법원으로 외국이 이송할 수 있다. 이송 시 소송은 배심원 없이 판사가 재판한다. 이송이 본 항에 근거하는 경우, 본 장의 1446 (b) 조 [28 USCS § 1446 (b)]의 시간 제한은 사유를 제시하고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다.

...

CERTIFICATION OF TRANSLATION
and
DECLARATION

State of California)
) S. S.
County Los Angeles)

I, Soomi Ko, the undersigned,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am a duly certified Korean Court Interpreter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certified by the State of California and the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s, with competent knowledge of Korean and English, and that I have truthfully and correctly translated following 2 pages of **28 U.S.C. § 1330, 28 U.S.C. § 1391(f), and 28 U.S.C. § 1441(d)** from English to Korean in accordance with Fed. R. Evid. 901 and that the said translation is,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 true and correct translation. I further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am neither counsel for, related to, nor employed by any of the parties, and that I have no financial or other interest in the outcome of any action related to this translation.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

Executed on February 27, 2018



Soomi Ko
California State Certified Court Interpreter
#300732
Direct: (213) 999-7848
soomi@komartin.com
www.komartin.com

Ko & Martin Certified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Specializing in Korean and Chinese Languages

28 USC § 1605A

§ 1605A. 외국의 관할권 면제에 대한 테러리즘 예외 사항

(a) 일반적으로,

(1) 비면제. 고문, 사법 외 살해, 항공기 사보타지, 인질 납치, 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물질적 지원이나 자원의 제공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개인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외국 국가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추구하는 경우, 그러한 외국 국가의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직무상, 고용상, 또는 대리인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물질적인 지원 또는 자원의 제공을 하는 경우, 외국 정부는 본 장에서 달리 다루지 않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의 심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청구를 심리해야 한다.

(A) (i) (I) (1) 항에 언급된 행위가 일어났을 때 외국 정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명되었거나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그렇게 지명되었고, 하부조항 II)에 따라 본 조항에 의해 청구가 제기되거나 본 조항에 따라 청구가 제기되기 전 6 개월 이내에 그렇게 지명 되었을 때; 또는

(II) 회계년도 2008 년 [본 섹션에 주] 국방허가법의 1083(c)(2)(A)를 이유로 본 항에 의거하여 재접수 되거나 또는 동법의 1083(c)(3)을 이유로 본 조항에 의거하여 제출된 [본 섹션에 주] 소송의 경우, (a) (7) 항에 의거한 본래의 소송 또는 관련 소송이 기각된 경우, 해당 외국은 (2008 년 1 월 28 일 제정한 본 조항의 제정 전에 효력이 있었던 바와 같은) 1605(a)(7) [28 USCS § 1605(a)(7)] 조항 하에서 또는 [28 USCS § 1605 (a) (7)] 또는 1997 년 589 조 (공법 104-208 의 A 부문 101 (c) 항에 포함 된 바와 같이) 해외 운영, 수출 금융 및 관련 프로그램 전용법 [28 USCS § 1605 주]의 589 조에 따라 원소 또는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테러리즘의 국가 후원자로 지명되었다.

(ii) 청구인 또는 피해자는 제 (1) 항에 기술된 행위가 발생한 때에 다음이었다 -

(I) 미국 국민;

(II) 군대 구성원; 또는

(III) 달리 미국 정부의 공무원 또는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계약을 이행하는 개인으로서 직원의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였다.

(iii) 청구가 제기된 외국에서 발생한 행위의 경우, 청구인은 수락된 국제 중재 규칙에 따라 청구를 중재할 합리적인 기회를 외국에 부여했다.

(B) (1) 항에 기술된 행위는 DC 의 미국 연방지방법원의 사건번호 1 : 00CV03110 (EGS)와 관련이 있다.

(b) 제한 사항. 소송이 시작되거나 (본 조항의 제정 일 전에) 1605 (a) (7) 항 또는 (공법 104-208 의 A 부문 101 (c) 절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1997 년 해외 운영, 수출금융, 및 관련 프로그램 전용법의 589 항[28 USCS § 1605 note]에 의거하여 관련 소송이 시작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다음의 후자 이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1) 1996 년 4 월 24 일 이후 10 년; 또는

(2)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0 년.

(c) 소송의 사적 권리. (a) (2) (A) (i) 항에 기술 된 바와 같이 테러리즘의 후원국가였거나 현재 후원국가인 외국과 그 외국의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직무, 취업, 대리인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동안 다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

(1) 미국 국민,

(2) 군대 구성원,

(3) 미국 정부의 직원 또는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계약을 수행하는 개인으로서 고용인의 고용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 또는

(4) 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기술 된 사람의 법정 대리인으로, 해당 외국 또는 그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하위 절 (a) (1) 에 명시한 행동으로 야기된 개인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금전적 손해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소송에서 손해 배상은 경제적 손해배상, 위로금, 고통 및 고난,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소송에서, 외국은 그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대리적 책임을 진다.

(d) 추가 손해배상. (c) 항에 의거하여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c) 항에 의거 한 소송이 그에 기반한 동일한 행동으로 인해 생명 보험 및 재산 보험에 따라 합당하게 보험이건 무보험이건 예측 가능한 재산 손실, 제 3 자 책임 및 손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 특별 마스터.

(1) 일반적으로. 미국 연방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손해 배상 청구를 심리하기 위해 특별 마스터를 임명할 수 있다.

(2) 자금 이체. 법무부 장관은 1984 년 형사범죄 피해자 법 제 1404 조 (42 USC 10603c)에 의거하여 제기되거나 유지된 사건이 계류중인 미국연방 지방 법원의 행정관에게 (1) 항에 따라 임명된 특별 마스터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이체해야 한다. 그러한 특별 마스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불된 금액은 법원 비용 항목을 구성한다.

(f) 항소. 본 항에 의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소송을 종료하지 않은 명령의 항소는 이 타이틀 [28 USCS § 1292 (b)]의 1292 (b) 항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g) 재산 처분.

(1) 일반적으로. 이 항에 의거하여 관할권이 주장되는 미국연방 지방법원에 제출된 모든 소송에 있어서, 소송에 제출 된 소장의 사본이 첨부된 본 조항에 따라 계류중인 소송의 통지 접수는 다음과 같은 모든 부동산 또는 유형의 개인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는 효과가 있다.

(A) 집행 또는 집행을 지원한 압류 대상, 1610 [28 USCS § 1610];

(B) 그 사법 구역 내에 위치;

(C) 피고의 명의, 또는 그러한 통지가 그러한 통제된 실체를 기재한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 피고인이 통제하는 실체의 명의인 재산.

(2) 통지. 본 조항에 의거하여 계류중인 소송에 대한 통지는 모든 계류중인 소송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방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모든 명명된 피고인과 피고인에 의해 통제된 모든 실체를 열거하여 색인 한다.

(3) 집행 가능성. 본 하부조항의 이유로 설정된 담보권은 본 타이틀 제 111 장 [28 USCS §§ 1651 이하]에 규정된 대로 집행 가능해야 한다.

(h) 정의. 이 조항의 목적 상 -

(1) "항공기 사보타지"라는 용어는 민간 항공의 안전에 반한 불법 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 제 1 조에서 그 단어에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2) "인질"이란 용어는 인질에 반대하는 국제 협약 제 1 조에서 그 단어에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3) "물질적 지원 또는 자원"이란 용어는 타이틀 18 의 2339A 조항에서 그 단어에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4) "군대 (armed forces)"라는 용어는 타이틀 10 의 101 조항에서 그 단어에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5) "미국 국민"이라 함은 이민 국적법 (8 USC 1101 (a) (22)) 101 조 (a) (22) 항에서 그 단어에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6) "테러 지원국"이란 1979 년 수출 관리법 제 6 조 (j) (50 USC App. 2405 (j)50 USCS § 4605 (j)), 1961 년 외교 지원법 (22 USC 2371)의 620A 조, 무기 수출 통제법 (22 USC 2780)의 40 조 또는 다른 법 규정의 목적을 위해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국무장관이 결정한 정부의 국가를 말한다.

(7) "고문"과 "사법외적 살해"라는 용어는 1991 년 고문 피해자 보호법 (28 USC 1350 주)의 3 조에 있는 용어의 의미를 갖는다.

CERTIFICATION OF TRANSLATION

and

DECLARATION

State of California)
) S. S.
Los Angeles County)

I, Soomi Ko, the undersigned,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am a duly certified Korean Court Interpreter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certified by the State of California and the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s, with competent knowledge of Korean and English, and that I have truthfully and correctly translated the following 4 pages of **28 U.S.C. § 1605A. Terrorism exception to the jurisdictional immunity of a foreign state** from English to Korean in accordance with Fed. R. Evid. 901 and that the said translation is,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 true and correct translation. I further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am neither counsel for, related to, nor employed by any of the parties, and that I have no financial or other interest in the outcome of any action related to this translation.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

Executed on February 20, 2018



Soomi Ko
California State Certified Court Interpreter
#300732
Direct: (213) 999-7848
soomi@komartin.com
www.komartin.com

Ko & Martin Certified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Specializing in Korean and Chinese Languages